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6월 1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권 도 업

●법률 제1146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6월 1일

국 무 총 리 김 향 식

국 무 위 원 권 도 엽
국토해양부 관

●법률 제114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 9명으로”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과”를 “1명을 포함하여”로, “위촉하는 사람 7명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